

## 제 87회 목포시의회 회의록

1. 개 의 : 단기 4291년 9월 7일 상오 11시 25분
2. 폐 의 : 단기 4291년 9월 7일 하오 1시 50분
3. 장 소 : 목포시 의회 의사당
4. 사 회 : 부의장 정 응 표
5. 출석의원 : 재적 16명 중 출석 13명  
결석의원 김남진, 천철수, 강영락 의원
6. 출석 공무원 : 시장 하동현, 부시장 이병규 및, 각과장
7. 의사일정
  - ◆ 보고사항
    - 제 85회 제2차 회의록 통과
    - 관외 출장결과 보고 ( 김삼성 의장 광주광면 )
  - ◆ 부의안건
    - 제 86회 의회시 대집행부 질의의 답변 청취
8. 토의사항
  - ◎ 제85회 제 2차 회의록 통과  
서기 박찬대 낭독 - 이의 없음으로 통과
  - ◎ 제86회 회의록 통과  
서기 박찬대 낭독

◇김 일 섭 의원

- 본 의원이 퇴장당시 하였던 발언이 누락되었으니 삽입하여주기 바란다.

◇서기 박 찬 대

- 즉시 삽입하겠습니다. 기타이의 없으므로 통과하다.

◎ 수해관계 구호대책 절충차 상도결과 보고

◇하 시장

- 의장님과 동도 상광하여 문사국장과 사회과장을 방문하여 그 실정을 보고하여 밀가루 276포대를 배급받아 각 이재민에게 배급하려 하고 있습니다.

◇김 일 섭 의원 긴급동의

- 각 동장의 무보수제를 실시한 이래 동행정의 쇠퇴를 견고 있다 함은 재론할 필요조차 없거니와 그 중에서도 죽교2구 강동장 호남 임동장 등 2,3인은 이를 천직으로 알고 성심성의 근무에 당하고 있는 것을 목격할 때 감탄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기회에 여사 모범동장을 집행부로 하여금 엄밀 조사토록 하여 의장명의로 표창장을 수여하여 그 사기양양에 일조 되도록 할 것을 긴급동의하여 재청이 있었다.

◇김 경 인 의원

- 김일섭 의원의 동의에 대한 취지는 극력찬동하는 바이나 집행부 연례 행사로서 개천절을 기하여 우량공무원 표창이 있으니 그 기회에 표창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김 성 균 의원

- 김일섭 의원의 동의에 삼청하면서 현 공익전당포 근무 이기남이와 같은 우량무원을 아울러 조사하여 표창토록 할 것을 첨가 동의집을 수락하다.

◇김 창 희 의원

- 우량동장의 표창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하루속히 보수지급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되리라고 본다. 직선제인 시장의 유급제와 의원들의 실비변상도 있

는데 직선제동장이라 하여 무보수로 한다는 것은 모순된 일이니 앞으로 유급제로 환원시킬 것을 긴급동의하다.

#### ◇김 상 대 의원

- 일반의 여론은 동장 무보수제로 한 것을 의결부에서 한 것 처럼 오인하고 있는 것 같으나 법정세율을 적용 부과시키는데 불가 부득dl 한 조치로서 집행부에서 제안한 안을 의결한 것뿐 이었던 것이다. 김창희 의원의 동의는 연내에는 무리한 일이니 김일섭 의원이 동의를 살려 개천절을 기하여 시상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김 경 인 의원

- 김일섭의원의 동의는 집행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차라리 김창희 의원의 발언에 동감하는 것이며 연내는 예산 관계상 무망이니 신년도 예산 편성 당시 고려할 것을 전제로 양동의를 보류토록 하자

#### ◇김 일 섭 의원

- 개천절의 연례행사라 함은 89회 이gn 없었던 일이다. 오는 개천절에라도 표창하수 있도록 본 의원의 동의에 찬동하여주기 바란다.

- 임석희, 이정권 의원이석하여 김일섭의원 동의를 표결한 결과 제석 11명 중 찬성 6표로 가결되다.

- 임석희, 이정권 의원 참석

#### ◎ 제 86회 의회시 대집행부 질의의 답변

#### ◇시장 하 동 현

- 1) 군사원호회 관계로 물의를 일으킨 퇴직직원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는 그 즉시 고발할라고 하였으나 부시장과 전 윤 사회과장이 타합한 결과 윤과장이 다소의 시일을 주면은 본인들을 상대하여 변상조치 시키겠다는 확약이 있었음으로 이를 보류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뜻을 본건을 발언하신 이정권 의원에게도 수차 말하여 왔던 것입니다.

- 2) 남교동 최주임의 재기용 관계는 시장이라 함은 여러 상인과 군중이 집합하여 있는 곳으로서 그 동안 수차 타 직원들을 배치하여 보았으나 그 효율 등이 졸렬하여 적임자 물색에 숙고 하였던바 최민홍씨 자신의 희망도 있고 하여 재기용하였으나 의원 각 위께서 부당하시다고 지적하시면 고려하겠습니다.

- 3) 수도사용료 징수이관 문제는 관계직원을 수차 독촉하였으나 역시 부진이어서 그 개선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재무과로 이관하였습니다.

- 4) 본인이 직접 각동의 순시는 금년에 들어서는 없었습니다 만은 일선 동운영이 극도의 마비상태에 놓여있는 실정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여러 가지 안을 짜가지고 검토 중에 있으니 의결부의 뜻을 받들어 신년도에는 적당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 5) 재무과 공금유용 사건은 사직당국에서 취급중이니 양해 하여주기 바란다.

- 6) 옥수수가루 175포대 각 기관 배급문제는 그 감량계상에 대하여 사실상 몰랐던 일이나 그 책임을 통절히 느끼는 바입니다.

- 7) 재무과 장려금 착복 여부문제는 왕년에 세무서와 시가 합동징수 독려에 당하였던 바 그 교부금 중 장려금 일부를 세무직원에게도 지급하였고 이에 대한 영수증이 보관비치 되었으며 해당 직원들도 근무중이니 사실여부를 대질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8) 대성병원 도로부설 문제에 대하여 본인이 모른다고 하였던 기억이 안 납니다.

- 9) 상수도공사에 대한 나주읍민측의 반대운동 문제는 요즘 새삼스럽게 나온 문제도 아니며 읍민 전부가 반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정부의 인수인가까지 받고 있는 것이며 정부방침도 변경 않고 있는 것이니 우리는 자중하여야할 시기라고 보아지며 만약 정부방침의 변경기세가 있다면 이는 중대한 문제이니 우리도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 10) 남아있는 휴관 계약문제는 총무과장에게 가격사정문제는 건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장 건 식 답변

- 1) 시유재산 수의계약문제에 대하여 과거에는 매도한 사실이 없고 90년 9월 7일자 의회의 의결을 경하여 건물 및 대지의 입찰에 부하여 불과 5, 6건

낙찰을 보았습니다. 그 외는 유찰 되어서 예정가격으로 하도록 시담에 응한 23건을 수의계약으로 하였으나 예정가격을 무시한 건이 있다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 2) 물품구입에 있어 액면 3만원 이상이 초과하면 입찰에 부하여야 되는 것이나 이렇게 하려면 공고기간으로 10여 일을 두어야 하기 때문에 대개 시급을 요하는 것은 부득히 수의계약으로 구입한 것이 수건 있으나 이것은 잘못된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 3) 확장비를 일반 경비에 지불한다는 문제는 확장비중의 사무비 판공비를 필요한 용건에 지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 4) 흡관계약에 있어 서울특별시와 비교하여 고가로 구입하였다는 문제는 그 당시 국내에 동일 회사가 없었고 이에 대한 상공부장관의 인증서를 접수 후 계약하였던 것이며 이 사실을 (수의계약) 심계원에도 통고한바 있습니다. (상공부장관의 인증서 낭독)

- 5) 그리고 흡관 대금 2만5천 원을 2만9천 원으로 또 3만2천 원으로 인상한 것에 대한 경위는 중앙의 승인으로 중앙의 수도권계장, 도 건설과 사무관과 미축 고문관 입회하에 인상계약을 한 것입니다.

- 6) 그리고 예산통과는 6월 30일에 하였는데 그 경비는 5월중에 기 집행하였다는 문제는 그 당시예산 잔고가 있어서 지출하였으며 6월 30일에 추경 예산을 통과시킨 것은 국고보조를 추가한 것이었습니다.

- 7) 국민저축관계는 시에서는 개몽선전에 주력하였고 지역별 직장별로 저축조합을 만들어 각반에서는 소속동을 통하여 예금한 것인바 이 예금은 자유로 못치게 만들고 동장의 확인을 얻은 후 찾게된 것입니다. 저금현재의 예금잔고는 42만원 이었습니다.

#### ◇건설과장 이 춘 흠 답변

- 당초부터의 경위 설명이 있었음 (내용생략)

#### ◇김 경 인 의원

- 1) 상공부장관의 인증서를 접수하여 가지고 제 6차까지 공급계약을 하여 약 4천본의 물품을 검수않았는데 이렇게 사전 공급계약을 안했다라면 중앙 산업과 경쟁입찰을 할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상공부장관의 인증서는 제 1차에만 적용되리라고 보는데 여하

- 2) 년금 착복문제에 대한 시장의 답변은 지극히 모호하다. 작년 4월에 발생한 사건을 일년간이나 경과하도록 방치하였다는 것은 애매한 답변이라 아니할 수 없다.

- 3) 시장주임 최씨 기용이유에 대하여 시장통솔 책임자가 없기에 부득히 채용하였다는 시장님의 답변은 300여 신청원을 모독한 말이고 아울러 전직원을 불신하는 발언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의회에서 다시 말하면 조치하겠다는 말은 유감이라 아니할 수 없다. 우리 의회측에서 어느 때 그 인사권을 침해한 일이 있었더라는 말인가

- 수도사용료 착복사실은 저반 사무감사당시 지적한 부정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답변하기 바란다.

#### ◇김 성 균 의원

- 1) 흡관대금을 인상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이유를 말하여주기 바란다. 이에 대한 물가지수를 조사한 사실이 있는가

- 2) 상수도공사의 공정이 몇%나 되었으며

- 3) 흡관의 공정은 몇%이고 흡관 제조에만 치중한 이유는 무엇인가

- 4) 흡관제조 현장에 감독직원을 배치 않을 이유는 무엇인가

#### ◇김 경 인 의원

- 1) 압력관의 중량을 검토한 사실이 있는가

- 2) 흡관제조에 외국으로 조회한 사실은 없는가

#### ◇이 정 권 의원

- 군경원호 연금착복비위사실에 대한 시장님과 대화내용설명이 있었음.

#### ◇건설과장 이 춘 흠 답변

- 1) 압력관의 중량은 일정의 표준이 있고 별로 구매를 안 받습니다.

- 2) 외국의 조회 여부는 OEC측과 조회하였으나 수입불능인것입니다.

- 3) 흡관제조현장에 감독직원을 배치않는 이유는 무단한 경비만 소모되고 오히려 시청측의 책임감만 무거워지기 때문입니다.

- 4) 흡관제조의 공정은 95%가량 직척하였다고 볼것이나 상수도 공사의

공정은 확실히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이유는 숨어있는 공사가 많기 때문입니다.

- 5) 흙관제조에 치중한 이유는 예산을 당년도에 쓰기위에서는 불가항력인 조치인 것입니다.

- 6) 흙관대 인상동기는 동력세의 인상 등 부득이한 것이었습니다.

◇재무과장 박 병 열 답변

- 수도사용료 부정착복문제는 건설과장과 같이 보증인을 종용하여 전액 정리하였습니다.

◇총무과장 장 건 식 답변

- 방금 답변할 적에 빠졌습니다. 만은 4291년 8월 17일에 제2차로 상공부장관의 인증서를 받은바 있습니다.

◇하 시장 답변

- 1) 군경연금 비위직원에 대하여는 될 수 있으면 희생을 안시키고 하도록 한 것이 었으나 책임자로서 죄송하게 생각하는 바이다.

- 2) 시장주임 채용문제는 수많은 시장 상인을 개별적으로 상대하는 직책이니 만큼 특수한 기술이 필요하다는 말이였다.

◇김 성 균 의원

- 흙관제조현장에 감독직원을 배치할 필요가 없다 하나 가령 시멘트 배합을같은 것을 소홀히 한다던가 하면 그 수명유지에 지장이 생기지 않겠는가 그리고 시장주임은 현 최윤희씨가 최적임자로 본다.

◇김 상 태 의원

- 상수도공사로 말미암아 건축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그물을 먹기 전에 홍수사태가 벌어져 미리서 죽게 생겼다. 조속한 시일 내 하수도준설에 치중하여 주기 바란다.

◇하 시장 답변

- 하수도 준설은 예산면에 계상된대로 실시하겠으며 명년도 예산면에는 홍

수방비책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김 경 인 의원

- 중앙산업으로부터 5월 17일자 안내장이 왔다하니 중앙청에는 그전에 등록이 되었을 것으로 믿어져 아직 미 검수한 4천여분의 흡관을 사전공급계약이 안되었던들 중앙산업과 경쟁입찰에 부할수 있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답변이 없었다. 그리고 김남진 의원의 발언내용을 집행부는 사실 무근이라고 부인하는 것이니 이의 사실여부를 규명하기 위하여 질의를 종결하고 소속별로 3인정도의 조사위원을 파견 조사토록 할 것을 동의하여 재청에 이어 삼청이 있어 표결한 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부의장 정 응 표

- 조정위원으로 명남철, 조양순, 김상대 의원을 지명하다.

- 폐회 선언하다.

( 하오 1시 50분 )

위 회의록을 확인키 위하여 자이 서명 날인함.

단기 4291년 9월 8일

시의원 김 성 균

시의원 명 남 철

작성자 서기 주 도 식